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존경하는 민병주 주택공간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구로구 제1선거구,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 서상열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4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18조 제6항에 따르면,

공공지원 대상사업은 시공자 선정 시기를 시·도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는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면,  
사업 기간이 증가하게 되어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초기 사업비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바,  
현재와 같이 도심 주택공급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는  
시공사 선정시기 단축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인  
정비사업 제도를 운영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지원계획(브랜드명:신속통합기획)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공공지원대상 정비사업의 경우 정비지원계획을 수립·반영한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전이라도 조합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공사 선정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